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9
----------	------

제출일자: 2018.

제출자: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요금 감경비율을 정비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을 규정하여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분화 및 경감비율 조정

(1) 시간별 주차요금 부과

- 최초 30분 4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 부과

(2) 주차요금 할인비율 조정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착 차량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주차요금 60퍼센트 경감

나.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 명문화

(1) 민간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2)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주차장법」 제21조의2
- 「주차장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 2018. 7월
- (3) 입법예고 : 2018. 7. 27. ~ 2018. 8. 16.
- (4) 비용추계서 : 첨부
-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심의) : 2018. 8월중
- (6) 군 의회 상정 : 2018. 9월중
- (7) 의결 및 공포 : 2018. 9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주차요금 및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차량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
2.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⑤ 둘 이상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할인율로 하나만 적용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존의 주택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자.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방법) ① 제15조의2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단위 : 원)

1회 주차요금(1 구획 당)		1일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주간	야간
400	200	4,000	40,000	30,000

- 비 고 -

1. 월 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상주차장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주간은 08:30~18:30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하며, 1일 주차권은 입하시간으로부터 당일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단,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은 다음날 08:30까지 한다.
3. 상기 요금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2배
 - 나.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3배
4. 군수는 도시 교통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u><신설></u>	제3조(주차요금)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 및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u> <u>1.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차량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u> <u>2.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u>
<u>③ 공영주차장 및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u> <u>1.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차량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u> <u>2.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u>	<u>④ -----</u> <u>-----</u> <u>-----</u> <u>-----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경감한다.</u> <u>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u> <u>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u>

현행	개정안
3.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비사업용 차량 <신설> ④ (생략)	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비사업용 차량 ⑤ <u>둘 이상의 주차요금 할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할인율로 하나만 적용한다.</u> ⑥ (현행 제3조제4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u>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군수는 설치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비와 군비를 각 50퍼센트로 한다.</u> ③ <u>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u> 1. <u>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u> 2. <u>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u> 3. <u>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u>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u>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1. <u>기존의 주택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자.</u> 2. <u>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u>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의3(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방법) ① 제1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비와 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② 제1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보조금은 시비와 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 1](개정 2017.12.29.)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단위: 원)

차종별	1회주차요금(1일당)	비고
소형 (승용, 승합, 화물)	2,000	
대형 (승합, 화물)	3,000	16인승이상 승합 2.5톤이상 화물
이륜차	500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단위: 원)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주간	야간
400	200	4,000	40,000	30,000

- 비 고 -

- 월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상주차장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주간은 0830~1830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하며, 1일 주차권은 입차시간으로부터 당일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단,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은 다음날 0830까지 한다.
- 상기 요금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2배
 -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3배
- 군수는 도시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 월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⑩. 생략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 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첨부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기 간 : 2019년부터 연중 사업 실시

나. 주요내용 : 주차시설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 개방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공사비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참여 촉진

○ 개방 약정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연장시 해당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개방 연장 유도

2. 비용 발생 요인

가. 부설주차장 주차시설물 설치비용의 보조

나. 개방 약정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지원

3. 관련조문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5조의3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부터 신규로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비용만 추계

나. 추계 결과 : 315백만원

○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 300백만원(20백만원×3개소×5년)

○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지원 : 15백만원(5백만원×3개소)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균비 각각 50퍼센트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주민복지국 교통과 정하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60,000	60,000	75,000	60,000	60,000	315,000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지원				15,000			15,000
재원 조달		60,000	60,000	75,000	60,000	60,000	315,000
의존 재원	소 계	30,000	30,000	37,500	30,000	30,000	157,500
	보조금	30,000	30,000	37,500	30,000	30,000	157,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30,000	30,000	37,500	30,000	30,000	157,5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